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. 4. 24 선고 2019가단462 판결 [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(변경전: E)

4. F

5. G

6. H

7. I

변론 종결2019. 3. 27.

판결 선고2019. 4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거제시 J 대 185m²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다, 라,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m² 지상 블록조 스텔트지붕 단층 창고, 같은 도면 표시 마, 바, 사, 아,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5m²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, 같은 도면 표시 자, 차, 카, 타, 자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8m²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를 각 철거하고, 거제시 J 대 185m²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

- 1) K은 거제시 J 대 18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'가', '나', '다', '라', '가'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15㎡ 지상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창고, 같은 도면 표시 '마', '바', '사', '아', '마'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65㎡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, 같은 도면 표시 '자', '차', '카', '타', '자'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8㎡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(이하 위 건물들을 모두 가리켜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었다(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).
- 2) K은 2004. 10. 11.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피고 I에게 증여하였고, 피고 I은 2004. 11. 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3) K은 2005. 9. 18. 사망하여,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그 소유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.
- 4)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,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. 11. 5. 접수 제63390호로 2014. 10. 21.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.
- 5)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117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5. 11. 27. K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더불어 위 법정지상권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,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되 피고들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'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. 10.

21.부터 2015. 9. 20.까지는 월 149,230원의, 그 다음 날부터 피고들이 거제시 J 대 185m²의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는 월 149,27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6. 1. 21.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의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

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. 10. 20.까지의 지료를 지급하였으나, 그 이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287조).

살피건대, 지상권자인 피고들이 지상권설정자인 원고에게 2016. 10. 21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원고가 피고들에게 2년 이상의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,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, D, F, G, H, I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위 피고들은, 피고 D, F, G, H, I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D, F, G, H,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(피고 D, F, G, H, I은 답변서에 이 사건 건물 소유지분권포기서를 증거로 첨부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여인지

별지